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36
----------	-------

발의연월일 : 2026. 8. 19.

발 의 자 : 한지아 · 고동진 · 배준영
김기현 · 박성훈 · 이상휘
박정하 · 조지연 · 김 건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12.2%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

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0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14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7년”을 “203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특례) 제10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추가로 지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u>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u> 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 ----- ----- <u>10</u> <u>0분의 14 이상의 금액</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u>2027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u>2032년</u> ----- -----.